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20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2년 8월 26일
- 나. 발의자: 고찬양 의원 외 14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 라. 상정일자: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 9. 2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와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26조부터 제129조, 제131조부터 제134조
- 입법예고(2022. 8. 30.~ 9. 5.)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1조
- 안 제2조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관련 제3호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로, 제5호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17조부터 제120조 까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로 인용 조문을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